



원본: 영어

No.: ICC-02/05-01/09

날짜: 2009 년 3 월 6 일

제 1 예심원

담당: 판사 아쿠아 퀴니히아, 부장판사  
판사 아니타 우사체카  
판사 실비아 스타이너

수단 다르푸르 사태

검찰 대(對) 오마르 하산 아마드 알 바시르(오마르 알 바시르) 건(件)

공개문건

오마르 알 바시르의 체포 및 인도에 대해  
제(諸) 당사국에 발송한 협조요청

발송: 사무총장

재판소 규정 31 조에 의거, 문건은 다음 당사자들에게 통보됨

검사실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, 검찰총장 에사 파알, 수석검사	변호인단
피해자 측 법정 대리인단	신청인 측 법정 대리인단
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피해자	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조정 및 보상 신청인
피해자 측 국선 변호인 사무실	피고 측 국선 변호인 사무실
국가 측 대리인	법정 조연자
<b>사무처</b>	
사무총장 실바나 알비아	변호 지원부
피해자 및 증인단	구치부
피해자 조정 및 보상부	기타

국제형사재판소(이후 “재판소”) 사무총장;

2005 년 3 월 31 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93 에 의거, 수단의 다르푸르 사태가 재판소 검찰총장 소관으로 이관되었음을 **고지하고**;<sup>1</sup>

오마르 하산 아마드 알 바시르에 대한 검찰 측 체포영장 청구가 2009 년 3 월 4 일자 제 1 예심원 판결(이하 “판결”)로 승인되었음을 **고지하고**;<sup>2</sup>

오마르 알 바시르에 대한 체포영장이 로마법전 58 조에 의거하여 제 1 예심원(이하 “예심원”)에 의해 발부되었음을 **고지하고**;<sup>3</sup>

로마법전 19, 20, 57 에서 60, 67, 87, 89, 91 및 97 조, 증거와 절차에 대한 규정 21, 117 에서 119, 176, 184, 187 및 196 조, 그리고 재판소 규정 31 및 111 조를 **고지하고**;

로마법전 89 조 1 항을 근거로 재판소는 용의자가 발견된 여하한 국가에 대해서도 그의 체포 및 신병인도를 요구할 수 있음을 **고려하고**;

증거와 절차에 대한 규정 176 조 2 항에 의거, 재판소가 사무국에 오마르 알 바시르의 체포 및 신병인도에 대한 요청서를 준비하여 제 당사국에 발송할 것을 요청하였음을 **고려하며**;

체포영장 발부 결정에 의거, 다음 인물의 체포와 신병인도를 **요청한다**:

<sup>1</sup>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1593, S/RES/1593(2005), 2005 년 3 월 31 일 채택.

<sup>2</sup> ICC-02/05-01/09-3.

<sup>3</sup> ICC-02/05-01/09-1.

- 성명: 오마르 하산 아마드 알 바시르(“오마르 알 바시르”), 오마르 알 바시르, 오메르 하산 아메드 엘 바시르, 오마르 알 베시르, 오마르 엘 바시르, 오메르 알바쉬어, 오마르 엘바시르, 오마르 하산 아마드 엘베시르 등으로도 표기
- 생년월일: 1944 년 1 월 1 일
- 국적: 수단
- 직업: 수단 공화국 대통령
- 기소혐의: 로마법전 8 조에 해당하는 전쟁범죄와 7 조에 해당하는 반인륜범죄를 다르푸르 지역에서 저지른 것으로 추정됨

체포및 신병인도 시:

최종 신병인도가 재판소 사무총장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오마르 알 바시르의 안전을 **요청하고**

로마법전 87 조 4 항에 의거, 본 요청과 관련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는 희생자, 잠정 증인 및 그 가족들의 안전과 육체적, 정신적 안녕을 위해 주의깊게 처리될 것을 **요청하고**

로마법전 59 조 3 항 및 89 조 2 항에 의거, 오마르 알 바시르가 개별 국가 법정에 제기한 모든 재판 신청에 대해 재판소에 통지해 줄 것을 **요청하고**

로마법전 91 조 2 항 (c)에 의거, 체포영장을 제외한 모든 서류나 증언 또는 정보는 신병인도 처리 과정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재판소로 통지해 줄 것을 **요청하고**

로마법전 97 조에 의거, 본 협조요청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제반 문제는 재판소로 통보해 줄 것을 **요청하고**

로마법전 89 조 4 항에 의거, 본 협조요청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제반 문제는 재판소로 통보해 줄 것을 **요청하고**

과정과 증거에 관한 규정 184 조에 의거, 오마르 알 바시르의 신병인도가 가능해지는 즉시 이를 재판소 사무총장에게 통지해 줄 것을 **요청하고**

신병인도 명령이 내려지는 즉시, 오마르 알 바시르를 재판소로 이송해 줄 것을 **요청하고**

회원국은 로마법전 59 조의 과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**상기시켜 드리며,**

로마법전 87 조와 91 조, 과정과 증거에 관한 규정 187 조 및 재판소 규정 111 조에 의거, 본 요청문과 더불어 다음 문건들을 **첨부함**

- i) 2009 년 3 월 4 일 발부된 오마르 알 바시르의 체포영장 사본 1 부
- ii) 오마르 알 바시르가 완전히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로마법전 및 과정과 증거에 관한 규정 내 관련조항 사본 1 부

[서명]

\_\_\_\_\_  
사무총장 실바나 알비아를 대리하여,  
재판소 최고 행정관 마크 두비송

2009 년 3 월 6 일

네덜란드 헤이그